

9 규칙부 보고

제105회기 규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김성환
서 기 김한욱

1. 조직

- 1) 임 원 : 부장 김성환, 서기 김한욱, 회계 조평재, 총무 이양수
- 2) 실행위원 : 김형국 김정호 나기철 문중수 김성수 이철우 홍승철 정민영 양용두 권희찬 남태섭 박춘근 윤남철 이월수 하종성 김장교 박진석 강전우 김종철 맹연환 김태영 배재철
- 3) 부 원 : 김상범 이명환 최주철 안영환 양대규 홍경수 강동호 이정환 김홍재 이순식 김세구 김정대 구재한 나학수 정수천 정중원 유용섭 반종태 이상덕 선우웅 배광식 김삼열 김만중 안병삼 양영규 지문태 김필곤 임영기 손진영 전정림 안상숙 장기순 이상협 서문환 허 장 송영의 양정택 신성길 서보천 이정호 정남훈 지성환 이말섭 채규현 이철재 심옥섭 박성은 이현국 임영섭 이성근 노호곤 김인천 김갑식 윤병철 김선익

2. 회의

1) 실행위원회

(1) 제1차 실행위원회의

- ☞ 일 시 : 2020. 10. 28(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 임원회에서 보내온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 처리요청(본부 제105-59)건을 보고하다.
 - 가. 교회세움위원회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정관 심의와 규칙개정(안)을 임원회로 보고한 내용을 보고받다.
 - 나.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니 제6장“선거에 대한 규제” 제24조 2항 선거방법(러닝메이트제도)는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대들의 결정을 받도록 하다.
 - 다. 제104회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로 맡겨 개정을 요청한 감사규정 개정 건은 규칙부 심의가 된 사항임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위 심의한 것 외에 심의할 것과 잔무 처리는 규칙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9. 21(월) 11:00
- ☞ 장 소 : 새에덴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규정(안)을 검토하다.
- ② 교회세움위원회 규정(안)을 검토하다.
- ③ 그 외 총회에서 수입된 사안이 있으면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20. 10. 20(화) 12:00

☞ 장 소 : 하야트호텔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에서 보내온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 처리 요청(본부 제105-58)건을 확인하고, 즉시 회신 요청한 정치부 결의에 의한 규칙개정 건과 운영규정을 심의하기로 하다.
- ② 교회세움위원회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규정(안)은 1차임원회에서 심의하였기에 심의안 대로 이상 없음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총회규칙 개정안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21. 1. 11(월) 11:00

☞ 장 소 : 대구 예꿈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 규칙 개정 심의
 - 가. 총회 규칙 제33조 수정안에 “그 때로부터(총회 총대가 선임된 날로부터)” 삽입하기로 하다.
 - 나. 총회 규칙 개정안은 총회 임원회 내용대로 심의하여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감사규정 개정안 심의하니 총회 임원회에서 보내온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는 별지대로 심의하여 확정하다.
- ④ 총회 교육개발원 정관 심의
 - 가. 교육개발원 정관 심의하여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나. 교육개발원 이사장 선거규정은 선관위로 보내어 요청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21. 2. 16(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분쟁노회 수습을 위한 매뉴얼(총회임원회) 심의 건은 10항 내용에 ‘무지역 노회 소속 되었던 지교회와 목사는 무지역노회로 가입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심의 확정하다.
- ② 사회소송 시행 세칙 심의 건은 제10조 3항에 “총회 개회가 임박할 경우에는” 내용을 “총회 개회 전 5일 이내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심의 확정하다.
- ③ 교정선교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 건은 유인물대로 심의 확정하다.
- ④ 세계선교회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심의 건은 유인물대로 심의하여 확정하다.
- ⑤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심의 건은 유인물대로 심의하여 확정하다.
- ⑥ 교육개발원 정관 제정 심의 건은 교육개발원에서 수정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확정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21. 5. 16(화) 11:00

☞ 장 소 : 하나인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현의부에서 질의한 제'94회 총회 규칙 개정안 관련 질의 건'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항 규칙부 임무에 근거하여 질의내용을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해당 부서로 반려하고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의 2항과 권징조례 제9장 제71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를 참조로 하여 보내기로 하다.
- ②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금지 관련 제도 연구와 산하 지교회 표준 정관안 연구, 권징조례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의 건은 총회로부터 수임 받았으나 연구비가 없기에 진행할 수 없어, 재정청원 하기로 하다.
- ③ 수임받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개별 연구하여 5월 27일 ~ 28일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21. 6. 3(목) 11:00

☞ 장 소 : 새안양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진주노회와 중서울노회에서 현의한 규칙개정 관련 건을 검토하니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맞추어 현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바 직전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반하는 현의안을 제출조차 할 수 없도록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그 외 규칙개정 현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보고하기로 하다.
- ② 한성노회에서 질의한 헌법적 규칙 3조 교인의 권리 2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질의 건은 헌법적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답하는 것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항 규칙부 임무에 벗어나므로 규칙부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제104회 총회에서 '교회가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함이 가하며' 결의된 내용을 제도화 하는 내용은 총무 이양수 목사에게 맡겨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총회 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지침 및 표준 정관안 연구의 건은 제104회기부터 수임되었으나 2회기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진행 되지 않기에, 106회 총회에 관련 위원회를 개설하여 추진하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⑤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의 질의 건은 서기 김한욱 목사에게 맡겨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⑥ 대구중노회에서 현의한 감사규정 개정 건과 제105회 총회 감사부 청원사항은 개별 연구하여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21. 6. 3(목) 11: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제도 연구와 교회 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



의 건은 이양수 목사의 연구 내용을 청취하고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

- ② 권징조례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 건은 김한옥 목사의 연구 내용을 청취하고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
- ③ 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개정안 내용 중 '2차 연임 할 수 있다'를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규정에 '1년조, 2년조, 3년조로 5명씩 구성'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보내오도록 통보하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21. 7. 20(화) 11: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제도 연구 건은 제106회 총회에 특별위원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 ② 권징조례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 건은 상충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법과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철저하게 준수하면 된다고 보고하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21. 7. 29(목) 16: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 ① 대구중노회 현의 감사규정 개정의 건은 ㉞제1장 제2조 변경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㉟ 제1장 3조(감사의 구분)의 건은 감사부 고유의 특성과 자율성을 감안하여 현의 변경안 대로 수정하기로 하여 제106회 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하다.
- ② 감사부 청원 건은 청원안대로 신설하여 제106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 ③ 제106회 총회 보고서항과 청원사항을 별지 내용대로 하기로 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21. 8. 19(목) 11:00

☞ 장 소 : 주님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규칙 제3장 9조 2항 14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일 경우 선거없이 확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수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다.(입후보자가 정수 미달인 경우 정수기간에 이미 등록된 입후보자는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로 규칙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②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일 경우 선거없이 확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수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다.(입후보자가 정수 미달인 경우 정수기간에 이미 등록된 입후보자는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로 규칙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7호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당해연도에 임원인 자는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로 규칙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사업보고

1) 총회규정 심의(제105회 총회결의) : 처리 후 총회임원회로 결과 통보

① 총회규칙

가. 총회실행위원회 상정 개정안 심의 : 아래 사항 변경 외 개정안대로

개정안	규칙부 심의안	총회임원회 확정
제33조(겸임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증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제33조(겸임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증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총회 총대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제33조(겸임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증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총회 총대로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나. 규칙부 결의로 상정한 개정안 심의 : 개정안대로

다. 상설위원회 신설에 따른 규칙 개정(운영규정 심의 포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조 2. 상설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임무(구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 (6) 반기독교대응위원회	(6) 교회세움위원회 (7)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명칭수정 신설

② 총회 감사규정 개정안 심의 : 개정안대로

③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 : 아래 사항 변경 외 개정안대로

가. 6조 5항

규칙부 심의안	총회임원회 확정
제6조 5. 위원이 춘계 정기노회 전 사임 하였을 경우 동일노회에서 선출직 에 출마할 수 있다. 단, 본인은 당회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제6조 5. 위원이 춘계 정기노회 전 사임 하였을 경우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기관장 에 출마할 수 있다. 단 본인은 당 회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나. 24조 2항 선거방법 : 총회에서 연구 보고된 결의가 없으므로 총회에 판단받아 처리



2)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심의(제105회 총회결의): 심의 후 해당 위원회로 결과 통보

① 분쟁노회 수습을 위한 매뉴얼(총회임원회): 아래 사항 변경 외 제정안대로

원안	규칙부 심의안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 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고 무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지역노회 또는 무지역노회로 가입 할 수 있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②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총회임원회): 아래 사항 변경 외 제정안대로

원안	규칙부 심의안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제10조(의견진술권 보장)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 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진술권 보장) ③ 총회 개회 전 5일 이내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 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진술권 보장) ③ 총회 개회 전 10일 이내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 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교정선교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
- ④ 세계선교회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심의
- ⑤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개정안 심의
- ⑥ 교육개발원 정관 제정(추가 개정사항 포함) 심의

3) 제105회 총회 수입사항 처리

- ① 총회규칙 개정, 총회감사규정 개정 관련: 개정안 청원
- ② 헌법적 규칙 3조 교인의 권리 2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 헌법적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답하는 것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항 규칙부 임무에 벗어나므로 규칙부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③ 권징조례 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 상충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법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면 됨
- ④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금지 관련 제도: 총회 결의와 국가법 간의 충돌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함
- ⑤ 교회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 지침 및 표준 정관안 연구: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진행되기가 어려워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함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규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예배시 집회시위금지제도 연구위원회 신설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금지 관련 제도 연구는 총회 결의와 국가법 간의 충돌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청원합니다.
2. 교회표준정관제정 연구위원회 신설
 교회산하 지교회의 정관제정 지침 및 표준 정관안 연구는 재정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청원합니다.
3. 총회규칙 개정
 - ① 총회교육개발원 정관이 통과됨에 따라 총회 실행위원회 조직에 삽입
 - ② 제105회 총회 수입된 규칙 개정
 - 가. 현의 내용 : 총회 제출 안전에 대한 절차, 원칙을 정하여 달라는 청원(총회안전 상정 요건, 기각된 동일안전 상정 제한, 직전 총회 결의에 반한 결정은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 일반안전은 과반수로 결정)
 - 나. 처리 내용 :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맞추어 현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바 직전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반하는 현의안을 제출조차 할 수 없도록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으로 부결하고 그 외 현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수정
제28조 각종 보고, 청원, 현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제28조 1. 각종 보고, 청원, 현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2. 총회의 안전제출은 본 규칙 제5조의 임원회, 제9조의 상비부, 제11조의 위원회, 제13조의 총회소속 기관, 그리고 21당회 이	번호 삽입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상의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노회가 제출하는 현의안은 노회결의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노회에서 임원회에 현의안 상정을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총회 결의 요건 제30조 각종 법규의 수정이 아닌 일반 안건은 재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1조 직전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 기존 총회규칙 9장은 10장으로 수정, 30조~33조는 32조~35조로 수정

③ 총회규칙 개정 제안(총회규칙 제9조 3항 9호 근거)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7)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7)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당해연도에 임원인 자 는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수정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제9조(상비부) 2. 선거 방법과 임기 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일 경우 선거없이 확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수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다.(입후보자가 정수 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수정
제11조(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일 경우 선거없이 확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수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한다.(입후보자가 정수 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정수미달인 경우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수정

4. 총회감사규정 개정 (제105회 총회 수입사항)

가. 현의 내용: 특별감사에 대한 개정 및 서류 관리 조항 신설

나. 처리 내용

현행	현의 변경안	비고
제3조(감사의 구분) 3.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3.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의견에 따라 총회장의 승인에 의해 실시한다.	수정
	제2장 제6조 다. 감사부는 감사에 얻은 개인정보 및 감사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감사한 모든 일체의 행정 서류와 진술서를 반드시 총회본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3년 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5. 재정 청원

가. 회의비: 1,500만원

나. 규칙부 공청회: 500만원

2021년 9월

규 칙 부

부 장 김성환

서 기 김한욱